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4. 19 선고 2021가단695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박한결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3. 15.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1. 6.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21. 6. 25. 접수 제9228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발급하였다. B는 이 사건 제2, 3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C가 원고의 대위변제 금원 및 각 약정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대지급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제1약정	제2약정	제3약정
대출기관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중소기업자금대출	중소기업자금대출
보증금액	209,000,000원	127,500,000원	85,000,000원
보증일자	2019. 5. 13.	2019. 8. 14.	2019. 8. 14.
보증기한	2020. 5. 12. (이후 2022. 5. 10.로 변경)	2020. 8. 13. (이후 2021. 8. 13.로 변경)	2020. 8. 13. (이후 2021. 8. 13.로 변경)

2) 중소기업은행은 2021. 9. 1. 원고에게 2021. 8. 13.자로 원금 연체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21. 12. 15.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C의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434,120,497원(=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 212,707,625원 +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 132,838,774원 +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 88,574,0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액수는 226,189,292원(=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금 132,838,774원 +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금 88,574,098원 +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 미수위약금 945,240원 +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 미수위약금 630,160원 + 가압류 등 절차비용 대지급금 3,201,020원)이다.

나. 처분행위

B는 2021. 6.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소유권 중 B의 지분 1/2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1. 6. 25. 이 사건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접수 제9228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재산상태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적어도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이행할 자력이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D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1. 6. 23.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이미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제2, 3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며, 그로부터 얼마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21. 8. 13. 신용보증사고가 통지되었고 이에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4개월가량 후 2021. 12. 15.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라 원고의 B에 대한 사후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아울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그 일대에 다른 부동산(갑 제9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에는 C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을 450,000,000원, 193,000,000원으로 하는 각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써 B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중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동산을 처분한 점, ③ 피고는 B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대물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이체 내역에 의할 때 피고가 2018. 4. 4. B에게 위 금원 상당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는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관련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 중 경북 성주군 E 공장용지 896㎡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로 시간적으로 근접한 2021. 8. 9. F주식회사가 청구금액을 12,973,569원으로 하여 가압류 등기를 하였고, 2021. 8. 1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B의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B는 이 사건 제2, 3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에

기초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매매계약이 채무의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B는 고향친구로서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투자하였다는 것으로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는 2013. 8. 7. B와 함께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의 지분을 각 1/2씩 취득하였던 점, ②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G의 감사로도 등기되어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에서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¹⁾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위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진

별지

1) 피고는 이 법원의 자료 제출 요청 내지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강력히

변론종결을 주장하였다.